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5일, 신정훈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2.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3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4.0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정훈의원)

현행 자원봉사 관련 법제는 2005년 제정 이후 주로 제도와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디지털 전환과 지역사회 구조 변화 등 오늘날의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지역공동체 구성원과 이주민, 외국인 등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또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약된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무보수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법적·재정적 위험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 탓에, 사고 위험과 부담이 자원봉사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첫째, 법률의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개정하여 개별 활동 차원을 넘어 자원봉사 정책과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시민’으로 넓히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참여 등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를 법체계 안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활동 진흥 책임을 명시하고, 자원봉사자가 봉사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재산적 손

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자원봉사자가 과도한 법적·재정적 부담 우려 없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종사자의 양성·채용·포상 등 처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명칭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센터가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의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자원봉사를 둘러싼 법·제도 전반이 오늘날의 사회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가 구축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